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295호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제27조 및 제29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을 추진할 지방정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 공모 공고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
- 사업목적 :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

2. 신청자격

- 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이 응모 가능*

*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

-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은 지방정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은 평가 제외
- '2026년 AI특화시범도시', '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, '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과 중복신청 불가

※ 세부 신청 요건은 공모지침(붙임) 참조

- 최근 5년간('21~'25)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의 협약 위반, 중도 포기 이력*이 있는 경우 평가 제외

* 다만,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사유(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, 사회재난 등에 해당)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

3. 지원규모 및 내용

- 총 2개소,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(국비:지방비=1:1 매칭 조건)
 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지역 내 규제특례 등 지원

< 참고 : 국비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유의사항 >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동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해당 보조사업의 '보조사업자'가 되며, 지방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 등(이하 '참여기관'이라 함)은 해당 보조사업의 '간접보조사업자'임
- 국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며, 지방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야 함(지방정부, 참여기관의 추가적인 투자 가능)

4.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6년 5월 11일(월) ~ 5월 13일(수) 18:00까지(접수마감)
- (제출처)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(LHRI, 지원기관)
- (제출방법)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, 아래 서류(원본 등)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

<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>

구분	공문 제출	서류 제출
제출내용	• 공문 및 공모신청서,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(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)	• 공모신청서 원본 1부(직인날인) • 사업계획서 15부(각종 증빙 포함) • 지방비 매칭 협약서 등 첨부서류 1식 • 원본 파일(USB 저장)
제출방법	• 전자문서 (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)	• 방문 또는 우편·택배
제출처	•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(2개 기관에 모두 제출)	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(LHRI) *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(☎ 042-866-8639, 8365)

5. 세부 절차 및 기준 : 공모 지침(붙임) 참고

6. 유의사항

-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**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**(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**부정한 방법**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**선정을 취소**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**반환하지 않음**
- 동 공고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
-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사업계획서(본문, 참고·증빙자료 등)는 **반드시 1권으로 제책**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(044-201-4973) 또는 지원기관(LH 토지주택연구원, 042-866-863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지침 1부.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지침

2026. 3.

국 토 교 통 부

||| 목 차 |||

I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요	1
II. 2026년 공모계획(안)	2
III. 평가 방법 및 기준	11
IV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	13
V. 제출서류 및 양식	15

[양식 1]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	15
[양식 2]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(안)	16
[양식 3] 지방비 매칭 확약서	29
[양식 4]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	30
[양식 5]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확약서	31
[양식 6]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	32
[양식 7]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	34

I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요

1. 추진배경

-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* 활성화 추진('25~)

*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결합된 '도시형 산업생태계' 구축이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(세계경제포럼, '26)

- 모빌리티, 로봇 등 첨단기술이 도시공간과 융합하여 연결·지능화
 - AI 혁신기술이 경제·사회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,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이 산업성장을 주도*

* AI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 상향 주도(IMF, '26)

☞ 도시여건 개선에서 나아가, 혁신기업이 모여 기술·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시공간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

2. 사업목적

- 민간친화적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, 일자리 확보,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지원
 - 스마트도시 여건, 연구·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「스마트도시법」 제29조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,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
 - 규제완화,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,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·실증에 유리한 환경 조성
 - 국내 혁신기업의 특화단지 집적, 실증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강화 및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지원
 - 국산 AI 반도체 활용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특화단지 실증 지원 등 도시 내 공공서비스의 AI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지원

II. 2026년 공모계획(안)

1. 지원대상 및 요건

□ 지원대상 및 규모

- (지원대상)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지역*을 선정·지원

* 특화분야 스마트서비스 실증과 기술집적에 적합한 혁신전략공간을 대상지로 한정

- (선정규모) 총 2개소

- (지원규모)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(국비:지방비=1:1 매칭)

- 국비(국고보조금)는 지방정부에 교부하며,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함
- 지방정부, 참여기관의 추가적인 투자(현물 또는 현금) 가능

□ 신청요건

- (신청주체) 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*

*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

-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완료(국토교통부 승인) 지방정부 신청

* 다만, 공모신청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완료(최종보고서 제출 필수) 또는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건은 인정

-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 지방정부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신청 가능
- 시·군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지방정부의 사업지원 협약서(붙임 양식 4) 제출
- 지방정부 주관으로 응모하되, 민간기업·공공기관·대학 등(참여기관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동 참여

유의사항

- **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**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**지방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**임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동 **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해당 보조사업의 '보조사업자'**가 되며,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 등(이하 '참여기관'이라 함)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**참여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의 '간접보조사업자'**임
- **지방정부는 사전에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동 공모에 응모하는 것이 원칙**임
 - 다만, 공모신청서 상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할 수 있음

< 참고 : 주체별 역할(예) >

정부		▶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·행정 지원
지방정부		▶ 사업 주관, 사업비 매칭, 공공서비스 구축·운영 및 인프라 구축
참여기관	지방공공기관	▶ 참여기관 및 사업비 관리 총괄 *(예) 지방정부 산하기관, 지방 공사, 공단 등
	민간기업	▶ 사업비 투자, 민간서비스 구축·운영,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

- **지방정부는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**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4조 제4항, 제15조 제5항, 「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」 제9조 제7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함
 - 지방정부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참여(예정)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재무안전성,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
- **참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등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***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 또는 ISMS-P)****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
 - *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,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
 - **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ISMS와 유사한 ISO 27001(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) 인정
 - 현행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유사 인증을 미보유한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체결 전일까지 인증절차 착수(신청)를 완료*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의 수행을 배제하여야 함
 - * 인증심사기관 인증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 증빙을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관 별도 제출

- (제외대상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는 공모신청서 제출을 하더라도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
 - 유사 목적 스마트도시 사업*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사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
- * 지역거점·거점형·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
- '2026년 AI 특화 시범도시', '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, '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에 중복 응모·신청 불가
- 최근 5년간('21~'25)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사업 등의 협약 위반, 중도 포기 이력*이 있는 경우(붙임 양식 6 제출)
- * 다만,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사유(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, 사회재난 등에 해당)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

□ 선정 우대사항

-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분야 관련 앵커기관(기업, 공공기관, 출연기관 등)이 특화단지 내에 입지하여, 지속가능한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
- 기업의 혁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위해 지방정부 전담 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지역
- 규제샌드박스(규제특례)를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 개발·실증을 특화단지 사업계획에 포함하고, 특화단지 내 기업의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
-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·실증을 포함하여 특화단지 스마트서비스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

※ 선정 우대사항은 평가기준 상 관련 항목의 정성평가 및 가점 등으로 반영

2. 지원사항

□ 국비 지원
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* 수립 비용 등 지원
 - *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서류 (“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61호)” 참조)
- AI 등 혁신기술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스마트서비스 개발·실증, 지원 프로그램, 실시계획* 수립 등에 대한 국비 보조
 - *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 실시계획
- 다만, 종전 사업지구*에 스마트 인프라·서비스 구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인 경우 동일한 사업 내용 포함 불가
 - *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기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

□ 규제특례 등 지원
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·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특례* 상시 적용
 - *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, 제42조의2,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
- 지방정부, 기업 수요에 따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)과 연계하여 특례신청·운영 지원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전담기관의 컨설팅 지원

3. 사업 추진방식

- (사업내용) 도시 여건과 혁신기술 연구·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,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
 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
 - 규제완화,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,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·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, 특화분야* 스마트인프라·서비스 구축 및 지원계획** 등을 수립
 - * 스마트도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AI 기반 신산업 분야로서 특화단지 주력 산업분야 (모빌리티&로봇, 지능형관제&안전, 스마트에너지, 헬스케어&복지 등 1~2개 특정분야)
 - ** 대상지, 사업내용(실시계획 등), 규제특례 적용 등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사항 포함
 -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특화분야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*를 구축하여, 신기술 도입·실증에 적합한 환경 조성
 - * (예) 시설구축, 5G 통신망, 데이터학습 등을 위한 AI 컴퓨팅센터, 데이터연계 기반시설 등
 - 실증환경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* 운영을 통해, 기업 지원(기술 개발·실증·마케팅)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유치, 규제특례 등 지원
 - * (예)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연계, 기업지원 등 특화단지 운영·지원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 등
 - 시민들이 사업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리빙랩 운영을 통해, 수요자 맞춤형 실증 활성화 지원
-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·실증 및 특화분야 관련한 혁신적인 스마트서비스 구축
- 데이터허브,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,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의 스마트서비스 개발·실증을 위한 공공데이터 구축·연계·활용* 구축
 - * (예) 데이터허브·통합플랫폼 연계, 특화분야 AI 학습데이터 구축, 데이터 개방·API 제공,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
- 특화분야 중심의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및 산업 전환 (AX) 실증사업* 추진
 - * (예) 기존 스마트서비스 AI 고도화, 데이터허브 AI 기반 개인정보 검출 및 전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, 지역 산업 AI 전환 실증, 상용화·확산 모델 구축 등

□ (수행방법) 참여기관은 소관 과업과 관련된 주요공정·핵심부문을 직접 수행

○ 주요공정·핵심부문을 참여기관의 전문영역을 고려*하여 사업계획 내 명시

* 예시) 로드맵(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), 인프라(실증환경 구축), 실증 서비스, 기업지원, 데이터 연계·활용 등

○ 참여기관의 사업비 중 물품구매(재료비), 단순설치·시공금액(시설비 등) 등을 제외한 사업비의 50% 이상을 직접 수행*하여야 하며, 외주에 따른 관리인건비는 외주비의 3% 이내로 제한함

* 예시) 신재생 에너지 실증 : 태양광발전 정보수집·분석·연계·제공 등을 위한 솔루션·플랫폼 구축 50% 이상 직접 수행, 태양광 패널구매 및 설치공사비 제외

○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정부와의 보조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, 지방정부와 타 참여기관이 발주하는 동일 사업 용역에 입찰참여 제한

- 지방정부는 사업선정 후 참여기관과 협약체결 시 일방적 해지에 따른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여야 함

○ 참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등 관련 과업을 수행한 경우*, 사업 종료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 또는 ISMS-P)을 완료하여야 함

*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,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

○ 공익적 활용가치가 크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*는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** 가능

*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공공의 책임하에 운영·관리되어야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

** 시설비 등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고 「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수행(참여기관은 중복 참여 불가)

□ (기타 공통사항)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, 서비스 공종별 관련 법령·절차* 적용

* 「건축법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등 준수

○ 사업지역이 신규·재개발 지구로서, 사업내용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* 적용

* 사업지구에 적용되었던 종전 사업법(택지개발, 도시개발, 주거정비 등)에 따라 추진

○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·인프라가 향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R&D 연구성과, 국내·외 표준 등을 적극 활용*

* (예) ISO 등 국제표준 및 지능형교통체계협회(ITS), 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등 국내표준 활용

□ 사업절차

①지방정부 선정 → ②사업계획 확정 및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체결 → ③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→ ④사업 착수 → ⑤중간 평가 → ⑥사업 완료 및 최종 실적보고

❶ (선정) 지방정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(안)을 마련하여 응모

-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정부 선정

- 컨소시엄 구성 전에 응모한 지방정부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한 내 컨소시엄을 구성(협약 등)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❷ (사업협약)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지원 사항, 사업관리, 성과 확산 등 사업계획 확정* 및 협약 체결

* 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, 세부내용, 성과 목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정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공모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완료*하여야 함

*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감액 등 검토

③ (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)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비전, 실증공간 및 인프라 조성 계획, 규제특례 및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계획 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

-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, 공정계획,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·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한 사업 실시계획을 특화단지 지정 서류인 시행계획과 함께 수립

※ 시행계획*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행계획으로서, 동 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을 포함하되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

*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61호)" 참조

※ 실시계획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립·제출(지방정부 → 국토교통부)하여야 함

④ (착수) 실시계획 수립(국토교통부 승인) 이후 즉시 사업 착수

⑤ (중간평가) 1~2차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

* 세부적인 평가방법, 내용 등은 선정 지방정부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

⑥ (최종 실적보고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(사업기간 종료일)부터 3개월 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

* 동 보조사업은 다년도(3년) 사업으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(매년 12.31일)에도 3개월 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4. 기타 유의사항

- (특화단지 지정 관련) 본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
 - 시행계획 수립 이후,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신청
 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(실시계획) 전체 사업기간(3년) 안에 특화단지 지정(시행계획) 사항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
- (예산) 지방정부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이 감액 등 조치될 수 있음
 - 수행 지방정부가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불이행, 협약 위반, 중도 포기, 지방비 매칭 불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가능
- (운영)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그 성과를 연차별로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
- (계획·관리)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·인프라와 기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·운영 필요
 -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방안 등은 「개인 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* 필요
 - *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세부사항 협의
 -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, 서비스 등 성과물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- (갈등관리) 공모 신청 시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, 시민 등 이해충돌, 이견 대립 요소 등 현장 여건을 명확히 밝혀야 함
(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)
 - 갈등의 존재 여부, 갈등의 심각성, 지방정부 갈등 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
Ⅲ. 평가 방법 및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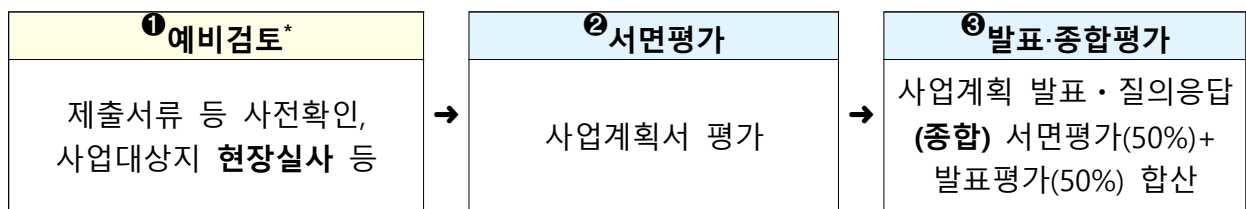
1. 평가 방법

□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
- 학계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 제고(위원 명단 등 정보 비공개)

* 해당사업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며, 평가회의는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

□ 평가절차 및 방법



* 예비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예비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에서 개별 공지 예정

- ① (예비검토) 신청요건 적격 여부,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사전 확인 및 현장실사단* 현장 여건 확인 등 예비검토 실시

* 분야별 전문가 동행

- ②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,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

*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

- ③ (발표·종합평가) 사업계획 발표평가(질의·답변 포함) 후 서면·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추진 지방정부 최종 선정

*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, 고득점 順 선정(단, 일정 수준 미달 시 미선정 가능)

▶ 평가 과정에서 비위* 또는 부정행위**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(취소)

* 비리행위 :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(뇌물·금품수수 등)

** 부정행위 : 부도덕한 행위(담합, 청탁, 의도적 평가 방해 등)

2. 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	배점	세부 평가항목
서면 평가 (50%)	총점	100	
	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	15	• 대상지 여건, 도시잠재력, 신산업 육성 여건의 당위성(5점) 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(5점) 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(5점)
	사업계획 우수성	45	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의 적정성(10점) - 대상지 적합성,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• 특화분야 혁신기술 실증환경 조성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(15점) - 통신망·서버,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- 기업실증 지원을 위한 조직(인력),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 • 특화분야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·실증계획의 적정성(10점) - AI 등 첨단기술 실증수준, 서비스 혁신성 등 •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성(10점) - 데이터허브·통합플랫폼 연계방안, 도시데이터 활용 및 지원계획 - 스마트도시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
	추진체계 적정성	15	• 단계별 추진계획 구체성,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타당성(5점) • 민·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적정성(5점) •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적정성(5점)
	사업의 지속가능성	15	•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방안의 실현 가능성(5점) - 특화분야 기술실증 활성화, 혁신기업 유치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•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(10점) - 사업성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조직 구성, 운영방안 - 제도, 예산, 인허가, 신산업 규제완화 및 관계기관 협업방안 등 ※ 지방정부가 특화단지 조성 이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 명세 포함
	성과목표 및 기대효과	10	• 성과목표(KPI)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(5점) ※ 사업체수, 종사자수, 매출 등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•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신산업 육성 등 기대효과 타당성(5점)
	가점	(2) (2) (2)	•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계획으로서, 「스마트 도시법」 제50조에 따른 실증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※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1건 당 가점 1점 부여(2건 이상인 경우, 2점 부여) • 국산 AI 반도체 활용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·실증 계획을 포함한 경우 •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(기관)이 특화단지 내에 입지한 경우
발표 평가 (50%)	총점	100	
	사업 추진의지	40	• 민간 친화형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의 우수성(20점) • 사업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·재정 지원방안 적정성(20점)
	사업계획 적정성	60	•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종합평가(60점) - 시민참여, 갈등요소 등 현장여건, 지역의 산업여건, 계획의 실현가능성, 효과성, 사업의 창의성·차별성 등

IV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□ 신청서 제출

- (신청기간) 2026년 5월 11일(월) ~ 5월 13일(수) 18:00까지(접수마감)
- (제출처)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(LHRI, 지원기관)
- (제출방법)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, 아래 서류(원본 등)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

<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>

구분	공문 제출	서류 제출
제출내용	• 공문 및 공모신청서,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(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)	• 공모신청서 원본 1부(직인날인) • 사업계획서 15부(각종 증빙 포함) • 지방비 매칭 협약서 등 첨부서류 1식 • 원본 파일(USB 저장)
제출방법	• 전자문서 (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)	• 방문 또는 우편·택배
제출처	•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(2개 기관에 모두 제출)	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(LHRI) *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(☎ 042-866-8639)

□ 유의사항

-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**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**(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**부정한 방법**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**반환하지 않음**
- 동 공모 지침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
-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사업계획서(본문, 참고·증빙자료 등)는 반드시 **1권으로 제책**

※ 본 공모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협의 통해 적용여부 판단

참고

세부 추진일정(안)

※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추진절차	추진시기	주요내용	비고
사업 공모	'26.3.13	· 공모 공고	국토교통부
사업설명회	'26.3.18	· 사업설명 및 Q&A	국토교통부
사업신청 및 접수	'26.5.11 ~5.13 [3일간]	· 공모신청서 접수	지방정부 → 국토교통부, 지원기관(LHRI)
사업 선정	예비검토 * 현장실사 포함	· 공모신청서 제출서류 등 확인, 평가대상 확정 · 현장실사	국토교통부 지원기관(LHRI) 현장실사단
	평가 및 선정	·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· 종합평가 및 최종대상지 선정	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
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(선정 후 2개월내)	~'26.8월	· 전문가 컨설팅 통한 사업계획 확정 · 협약체결(국토교통부↔지방정부)	국토교통부 ↔ 지방정부
특화단지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(선정 후 6개월내)	'27.2월	·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안 제출 * 실시계획안 적정여부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('27上)	지방정부, 참여기관
착수	실시계획 승인 후	·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·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(스마트도시법 제24조)	지방정부, 참여기관
사업실적 중간평가	미정	· 1~2차년('26~'27년) 시행계획 이행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	국토교통부, 지원기관(LHRI), 지방정부
사업 최종점검	미정	· 사업성과 최종보고 및 향후 특화단지 운영계획 점검	국토교통부, 지원기관(LHRI), 지방정부
사업완료	~'28년	·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속 운영	지방정부, 참여기관

V. 제출서류 및 양식

양식 1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

공 모 신 청 서

신청인	○○시장(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지사(시장), 시장, 군수)			
책임자	○○실·국 ○○과장 ○○○ (☎000-000-0000)			
담당자	사무관 ○○○ (☎000-000-0000, ooo@korea.kr) 주무관 ○○○ (☎000-000-0000, ooo@korea.kr)			
신청 사업	사업명	○○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		
	사업위치	○○시 ○○동 일원		
	사업면적	000,000m ²		
	사업기간	2026 ~ 2028.12		
	추진목표	추진목표 작성기재		
	사업내용	사업 내용과 목적, 기대효과가 드러나도록 3줄 이내 요약		
	사업비 (억원)	합계	국비	지방비 민간투자 (참여기관 부담)
	참여기관 등	민간기업 등 참여기관 명칭(사업자등록번호) 및 대표자명 명시		
첨부 서류	1. 사업계획서 각 15부 2. 개발사업시행자,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. 파일 원본(USB, CD 등) 1부			

위와 같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.

2026년 5월 일

(지방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○○○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공 모 신 청 용



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(안)

2026. 5.

지 방 정 부 명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요약서

※ 5쪽 이내로 작성,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(1쪽) 참고 첨부

지방자치 단체명	○○○시·도, ○○○시·군	참여기관 등	모든 기관 명시
사업명칭	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(부제 :)		
사업개요	▪ 사업대상지 개요		
사업 필요성	▪ 대상지 여건 및 신산업 육성 잠재력 ▪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, 기본방향 ▪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▪ 관련 계획 검토		
사업계획	▪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 ▪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 ▪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▪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		
추진체계	▪ 단계별 추진계획 ▪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▪ 지방정부,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▪ 거버넌스 구성·운영계획 ▪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		
사업 운영방안	▪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▪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		
성과목표 및 기대효과	▪ 성과목표(KPI) 및 실현가능성 ▪ 기대효과		
작성 담당자	▪ ○○○시/군 ○○○실·국 ○○○과 (정) ○○담당 직위(급) 성명 (044-000-0000, abc@korea.kr) (부) ○○담당자 직위(급) 성명 (044-000-0000, def@korea.kr)		

목 차

I. 사업개요 ...	1
1. 사업명	0
2. 사업 대상지 개요	00

[별첨]

1. ○ ○ ○ ○	00
------------------	----

작 성 안 내

◆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 필요

- (형식)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
 - 사업계획서는 표지, 공모신청서(사본), 요약서(5쪽 이내), 목차, 본문(45쪽 이내) 및 참고자료(분량제한 없음),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
 -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,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본
 - * 링·스프링 제본 지양
- (요약서)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5쪽 이내로 작성하되,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(1쪽) 참고 첨부
- (본문) 본문은 A4 45쪽 이내로 하며, 참고·증빙자료를 첨부하되, 순서에 따라 별첨
 -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
 -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, 위치를 본문에 표시
 - 편집 용지(A4) 여백은 왼쪽·오른쪽 각 20mm, 위쪽·아래쪽·머리말·꼬리말 각 10mm로 설정
 - 글자 서체/크기는 본문 휴먼명조/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%
 - 작성양식의 이탤릭체(파란색)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
 -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·첨부하며,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
 -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,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
- (발표자료) PPT 20쪽 이내로 작성(신청 지방정부 모두 작성 필요, 제출일자 별도 공지)
 - 양식 자율, 글꼴은 기본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(안)

1. 사업 개요

- 1.1 사업명
- 1.2 사업 대상지 개요

2.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

- 2.1 대상지 여건 및 신산업 육성잠재력
- 2.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 및 기본방향
- 2.3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
- 2.4 관련 계획 검토

3. 사업계획

- 3.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
- 3.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
- 3.3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
- 3.4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

4. 추진체계

- 4.1 단계별 추진계획
- 4.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- 4.3 지방정부,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
- 4.4 거버넌스 구성·운영 계획
- 4.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

5.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운영계획

- 5.1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
- 5.2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

6.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

- 6.1 성과목표(KPI) 및 실현가능성
- 6.2 기대효과

목 차 별 작 성 요 령

1. 사업 개요

1.1 사업명

- 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
(부제 :)

1.2 사업 대상지 개요

- 사업위치 : 1) 법정/행정동 구분 입력, 2) 지번(도로명)은 사업대상지 대표지번(도로명)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(도로명) 등
- 사업면적 : 00,000 m²
- 사업기간 : 0000년. 0월 ~ 0000년. 0월 (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)
- 특화 유형 : 입지 기업, 주요 실증서비스 등을 감안하여, 스마트도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AI 기반 신산업 분야로서 특화단지 주력 산업분야를 설정
- 대상지 유형 :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,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, (재)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(예, 00지구 도시개발, 택지개발, ○○특구 등)
- 사업위치도 :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) 시·도에서 시·군·구의 위치, 2) 시·군·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, 3)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(경계)를 지도에 표기
 - ※ 사업위치는 특화단지 지정구역 대상지로서, 지역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표기할 것
-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

사 업 개 요	
사 업 명 칭	00 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
사 업 위 치	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
사 업 면 적	00,000㎡
사 업 기 간	0000년. 0월 ~ 0000년. 0월
특 화 유 형	000유형(스마트도시 분야별 특화유형 작성, 1~2개 이내)
대상지 유형	○ ○ (기존도시, 신규개발, 00지구 도시개발, 재정비, ○○특구 등)
기타 특이사항(필요시)	

<위 치 도 1>

<위 치 도 2>

< 참고 : 특화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요 서비스모델 예시 >

분야	특화 방향	서비스모델 예시
① 모빌리티 & 로봇	AI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, 안전성을 강화하며, 사용자 경험 및 삶의 질을 향상 (도시의 이동성 및 편리성 제고)	· AI기반 교통 신호 최적화, 자율주행 및 긴급 상황 경고, 대중교통 효율화 등 · 로봇 분야 스마트 배송, 건물 관리, 순찰 · 드론, 로봇을 활용한 해상사고, 화재, 홍수 현장 조난자 구조
② 지능형 관제 & 안전	도시 관리의 실시간성 및 효율성 극대화, AI 활용으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, 빠른 의사결정, 개인정보 보호 실현, 위험요소 감지 및 예방, 대응 (도시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)	· 스마트 교통, 안전, 에너지, 환경, 시설 관리 · 지능형 범죄 예방, 실시간 화재 및 재난 감지, 비상 알림, 응급 대응 · 차량 영상을 활용한 도로 및 시설물 관제
③ 스마트 에너지	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AI 기술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, 예측, 제어를 수행하는 에너지 관리 서비스 (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)	· 분산에너지 및 스마트 전력망 관리 (가정, 건물, 단지 등 공간 위계별 접근) · 지능형 에너지 소비 분석 및 최적화 · 재생 가능 에너지, 스마트 조명 및 HVAC 시스템, 전기차 충전 관리
④ 헬스케어 & 복지	AI 기술을 활용하여 초고령화 및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포용도시 구축 (스마트 포용, 도시복지 향상)	· AI 기반 헬스케어 및 홈케어, 위험 감지 및 자동 구조 호출, 노약자를 위한 전자 행정 서비스 · AI 기반 육아 코치, 스마트 교육 플랫폼, AI 돌봄 로봇, 스마트위케이션
⑤ 융복합	삶의 질을 높이는 대시민 체감형 AI 기반 생활환경 서비스 (삶의 질 향상)	· AI 기반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 서비스 ·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, 생활·환경·문화 플랫폼, 공유 경제 활성화 플랫폼 · 스마트홈, AR/VR 기반 학습 콘텐츠 등

2.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

2.1 대상지 여건 및 잠재력

- 대상지 여건
 - 일반현황 위주의 기초자료 단순 준용 및 제시는 지양하고, 특화단지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
 - 설문조사,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
-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잠재력 등 종합진단
 - 대상지의 강점, 약점, 기회, 위협 등을 종합 진단하여 광역권에서 거시적으로 분석
 - 도시잠재력 분석은 향후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친화적 기업활동 및 실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특화단지의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, 특화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함
 - 대상지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특화단지로서 스마트도시 및 AI 서비스 개발, 구현, 실증, 확산 등과 연계되어야 함
 -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와 연계성 및 도시 특성을 제시하고, 사업기간 내 조성 및 운영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

2.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 및 기본방향
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 사유 제시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
 - 특화단지의 특화유형(스마트도시 분야별 추진 유형 / 예시 : 스마트 모빌리티, 스마트 로봇, 스마트 안전, 스마트 에너지 등), 조성 컨셉, 방향성 등을 제시

2.3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

-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제시
 - 대상지 여건, 도시잠재력,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특화단지의 비전 및 목표 설정
- 사업 추진전략
 -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

2.4 관련 계획 검토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, 스마트도시계획,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있을 경우 기술
 - 그 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타 부처 사업 및 기타 사업들이 있는 경우 연계방안 제시

3. 사업계획

3.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

- 대상지의 적합성,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체적인 공간계획 제시
 - 필요시 지도 또는 도면을 활용하여 대상지 여건, 도시공간구조와 특화단지의 관계성, 전반적인 사업내용 표시와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 또는 정합성을 표현한 구상(안) 등을 제시

3.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

- 특화단지 및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·운영계획 제시
 -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
 - 특화유형 실증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
(단,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노후 실험장비 교체 등은 지양)
 -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 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하며, 각 인프라 및 서비스는 별도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(아래 양식 참고)
 -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

<과제 카드 예시>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도입 목록

연번	1	분류	교통, 환경 등	인프라(서비스)명	000 서비스
인프라(서비스) 내용			서비스 정의		
			주요 내용		
			시나리오(요약)		
인프라(서비스) 추진계획			추진체계	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	
			이슈 및 대책		
			추진일정		
			소요예산		
운영계획			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		
서비스 시나리오	<개념도>				

-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맞는 기업활동 및 실증 지원을 위한 조직, 운영 프로그램 제시
 - 산업육성 및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(프로그램) 제시
 - 경제·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방정부에서 기존 운영 중인 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(조례 등)와 같이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위한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 가능

<참고> AI 서비스 및 실증환경 예시

구분		실증 예시		
		교통관제 (AI CCTV)	환경오염 모니터링 (드론)	재난 대응 (로봇)
AI 서비스		▶ 지능형 교통관제 서비스 ① AI CCTV ② 스마트 신호등 ③ 신호 제어 기술	▶ 실시간 객체 인식 기반 환경오염 관리 서비스 ① 이동형 항공 디바이스 ② AI CCTV ③ 환경오염 관리 플랫폼	▶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감지·초기 대응 서비스 ① 자율행동로봇 ② 전기차 화재 진압 기술 ③ 화재 알림 통합 플랫폼
실증 환경	도시 데이터	① 대중교통 통계 자료 ② 실시간 교통정보	① 지도 데이터 ② 개발제한구역 정보	① 건물 현황 자료 ② 지도 데이터
	개별 인프라	- AI CCTV 설치용 기동 등	- 드론 스테이션 등	- 로봇 스테이션 등
	공통 인프라	① (통신 기지국) 엣지 서버와 디바이스 간 통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 ② (엣지서버) 데이터 학습, AI모델 업데이트 등 수행 ③ (전력시설) 기기, 서버 등 서비스 가동을 위한 전력 라인 및 시설		

3.3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

- AI 기술 활용 및 도시데이터 활용을 전제로, 특화단지 주요 서비스 유형 개발·구현·실증계획 제시
 - 특히,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내용 포함
 - 특화 분야 관련 기타 스마트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가능
 -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
- 규제샌드박스(규제특례)를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 개발·실증계획인 경우 해당 규제샌드박스 활용 내용을 별도 표시
- ISMS 인증 필요 대상 개발 및 실증계획의 경우 관련 내용 별도 표시

3.4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

- 실증 및 특화단지 도시운영관제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활용계획(지원방안) 제시
 - 실증 및 특화단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(AI 서비스 개발/구현/실증 데이터,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데이터, 각종 도시관제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 등)와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(통합플랫폼, 데이터 허브, 빅데이터 플랫폼, 데이터 마켓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을 위한 공공 플랫폼 연계 및 실증 지원방안 등) 간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을 제시
 -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정보 처리 방안 등 제시
 - 플랫폼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을 통해 민간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시나리오 제시

4. 추진체계

4.1 단계별 추진계획

-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, 각 연차별 및 단계별 단위사업의 추진체계 제시
※ 추진단계별 기간, 세부성과목표 등 마일스톤을 명확히 설정
- 특화단지의 물리적 시설과 각 단위사업,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

4.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
-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, 연도별,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(예산집행계획 포함)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
- 사업내 민간투자가 포함된 경우, 투자의향서, 투자협약서 및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증빙자료로 제시

< 참고 1 : 공종별 내역 양식 >

- 공통(기반구축) 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 사업	세부사업		사업 기간	총 사업비					연차별 집행계획		
				계	국비	지방비	시행자	민간	'26	'27	'28
합 계(①~④)				0	0	0	0	0	0	0	0
소 계(①)				0	0	0	0	0	0	0	0
시행계획 수립		-	00 ~ 00	-	-	-	-	-	-	-	-
소 계(②)				4,860	1,539	1,146	1,234	2,175	872	2,344	1,645
기반시설		-	00 ~ 00	-	-	-	-	-	-	-	-
소 계(③)											
주요서비스		-	00 ~ 00	-	-	-	-	-	-	-	-
소 계(④)				1,591	1,019	573	123	-	396	596	600
사업지원	리빙랩, 산업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등	-	00 ~ 00	-	-	-	-	-	-	-	-

- 특화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 사업	세부사업		사업 기간	총 사업비					연차별 집행계획		
				계	국비	지방비	시행자	민간*	'26	'27	'28
합 계(①~③)				0	0	0	0	0	0	0	0
소 계(①)				0	0	0	0	0	0	0	0
특화 서비스 개발 및 구현	000	-	00 ~ 00	-	-	-	-	-	-	-	-
	소 계(②)			4,860	1,539	1,146	1,234	2,175	872	2,344	1,645
AI 서비스 고도화 실증	000	-	00 ~ 00	-	-	-	-	-	-	-	-

< 참고 2 : 비목별 내역 양식 >

- 공통(기반구축) 사업 비목별 내역 양식

(단위 : 백만원)

비목별 예산계획					
비목별	사업 기간	국비	지방비	민간	총 사업비
인건비	00 ~ 00				
운영비	00 ~ 00				
외주 용역비	00 ~ 00				
..					

- 특화사업 비목별 내역 양식

(단위 : 백만원)

비목별 예산계획					
비목별	사업 기간	국비	지방비	민간	총 사업비
인건비	00 ~ 00				
운영비	00 ~ 00				
외주 용역비	00 ~ 00				
..					

* 사업비 비목구분은 및 내역작성은 「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」
(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-51호, 2026.3.4.시행) 참고

4.3 지방정부,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

-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 주체별 역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(기관, 기업 명칭 기술)
- ※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예시 : 아래 표는 단순 예시이며, 각 주체별 업무영역 및 단위사업별 업무내용을 명확화 제시
- ※ 단, ①핵심산업 앵커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역할을 하거나, ②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또는 지역공공기관 전담조직(센터)을 구성할 경우, 별도의 사업추진주체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

정부	▶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·행정 지원
지방정부	▶ 사업 주관, 사업비 매칭,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, 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
지역공공기관	▶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, PMO 역할 수행, 특화 분야 서비스 연계 신산업 규제특례 검토 및 지원, 기업 지원사업 추진,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
주요 핵심산업 앵커기업(기관)	▶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 지원, 기반시설 구축 지원, 서비스 개발·구현·실증 등
개발사업시행자	▶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, 공공서비스 위탁운영, 자금투자
민간기업	▶ 사업비 투자, ○○민간서비스 개발·구현·실증·운영,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

- 민간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(컨소시엄 공모 공고, 선정 결과 통지서 등)하고, 컨소시엄 구성 예정인 경우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

4.4 거버넌스 구성·운영 계획
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(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, 주민협의체 등) 구성·운영방안 제시(방침문서, 운영계획서, 관련 MOU 등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)
 - ※ 특히, 민·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을 명확히 제시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, 이해관계자, 관계기관,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방안 제시
- 기업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·실증·상용화를 위한 보급·확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, 관계기관 등 참여방안 제시

4.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

- 지방정부(보조사업자)의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대책
-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지방정부 대응 방안 기술

5.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운영계획

5.1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

- 사업기간 내 스마트도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제시
 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실증체계(기술 실증 프로세스 및 신산업 규제완화 행·재정지원 등) 및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모델과 이행방안 제시
 -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에 따른 실현 가능한 혁신기업 유치계획 제시
- 공공 관리영역(B2G)과 민간 관리영역(B2B, B2C)을 구분하고 사업관리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와 사업종료 이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
 -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
 - 특화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자체 수익모델 제시(수익성 낮은 사업의 경우,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안 등 검토)
 - 사업 완료 후 특화단지 운영 및 기업의 실증환경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의 지속가능 운영방안, 자산 및 조직구성, 예산 및 지원인력, 지방정부(공공기관) 관리 감독기능 등을 제시

5.2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

- 제도, 예산, 인허가, 신산업 규제 완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방정부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·인력 등의 명세 포함(준공 이후 기업지원 및 운영체계 등)
<지원방안 예시>
 - 법제도 정비 : 사업 실행 및 운영지원 관련 조례 재개정, 내부지침 개발, 특화단지 운영규정 개발 등
 - 예산지원 : 사업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예산보조 방안(특화단지 운영)
 - 인허가 지원 : 정부 규제샌드박스 활용지원, 사업대상지 내 시설점용허가, 사업인가 지원 등
 - 상기내용 운영을 위한 인력 방안 등
 - 관계기관 협의 : 정부부처, 관계 시·군·구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

6.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

6.1 성과목표(KPI) 및 실현가능성

- 사업 구축단계 및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단위사업별 정량적 성과목표(KPI) 제시
 -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KPI의 경우, 이용만족도 등 피상적인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
- 특화서비스 및 AI 개발, 구현, 실증, 확산 등에 대한 정량적 성과목표(KPI) 제시
- 특화단지(산업생태계) 조성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관련 정량적 성과목표(KPI) 제시
 - (예) 신규 사업체수, 종사자수, 매출액 등
- 성과목표 측정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
 - 지방정부 또는 컨소시엄 구성사 자체조사, 외부용역 수행 등
- 성과목표와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연계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진단 제시

6.2 기대효과

- 사업 시행을 통해 스마트도시산업 거점으로서 신산업 육성 효과를 창출하는 내용을 정량적·정성적으로 제시
 - 정성적 기대효과 : 스마트도시산업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 위주로 작성
 - 정량적 기대효과 : 신산업 육성 효과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
- 특화단지 조성과정 또는 조성 이후 발생할 혁신성장, 일자리 확보(신규), 경제적 가치 실현에 대해 정성적 기대효과와 정량적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
- 특화서비스(AI 적용 스마트서비스, 혁신기술 적용 스마트서비스 등)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나타나는 기대효과 제시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

지방비 매칭 확약서

우리 신청지방정부명에서 제출하는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이 귀 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·확정될 경우,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, 선정평가 계획(안)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연차별	지방비 매칭		비고
	금액 (억원)	기한	
계(3년)			
2026년		2026. 9월	
2027년		2027. 1월	
2028년		2028. 1월	

2026년 월 일

(지방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○○○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협약서

〇〇〇시·도는 신청지방정부명에서 제출하는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이 귀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·확정될 경우, 신청지방정부명가(이) 특화단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〇〇〇시·도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, 서비스 및 솔루션 연계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26년 월 일

(신청기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〇〇〇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양식 5

참여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 또는 ISMS-P) 인증 현황 및 확약서
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현황 및 확약서

우리 **신청지방정부명**가 제출한 사업내용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 사업이 있으나 미인증 상태에서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, 협약체결 전까지 인증 신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, 미이행 시 해당 공모사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기관명 (기업명)	구분	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역 (사업명, 기반시설명, 서비스명 등)	인증 대상 여부*	인증 여부**	인증 완료 예정일***	기존 인증	
						사업명	인증 기간
	기반시설		O / X	O / X	00.00.00	기존 인증 없을 시 마작성(타사업명)	00.00~00.00
	서비스		O / X	O / X			
⋮	⋮	⋮	⋮	⋮	⋮	⋮	⋮

*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,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

**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ISMS와 유사한 ISO 27001(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) 인정

*** 인증 대상 중 미인증 시 인증 예정일 기재(협약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계약을 완료한 경우 인정)

2026년 월 일

(지방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○○○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

우리 **지방정부명**은 최근 5년간 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도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아울러, 「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」 공모 신청 이후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·확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2026년 월 일

(지방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○○○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행 목록

* 최근 5년('21~'25)

공모 선정년도	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비(억원)				국토교통부 소관부서
			계	국비	지방비	민간	
		'00.00~'00.00					

양식 7

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(최근 5년, '21~'25)

※ (작성대상)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부부처(청)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

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(최근 5년, '21~'25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연 번	주관부처	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비				국고보조금 반환 내역		
					계	국비	지방비	민간	교부결정 금액	취소·반환 비율	사유
사업비 총액 기준*	1			'00.00~'00.00					00,000	00.0%	
	2										
	3										
	⋮										
	합 계										
반환 금액 비율 기준**	1										
	2										
	3										
	⋮										
	합 계										

* (작성방법) 최근 5년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비 총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최대 10개 이내 기재

** (작성방법) 최근 5년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비 총액 대비 반환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최소 10개 이상 기재

2026년 월 일

(지방자치단체장) (단체장명 ○○○)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